

19.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I. 특별위원회 구성

1. 특위 구성경위

- 1997.10.22~2002.8.31까지 사업비 2,254억원(민자 1,683억, 시비 571억)을 투입하고, 2002.9.1 개통하여 대구동부순환도로(주)에서 유료도로로 운영 중에 있는 범안로 민자도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을하동, B=35~50m, L=7.25km)에 대하여
- 민자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교통량이 대구시가 추정하여 확정된 계획교통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년 150억원 내외의 막대한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시의회에도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의 신뢰성 실추 및 재정부담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범안로의 관리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 제15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이경호의원외 9명의 의원의 발의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 특위 구성결의 후 김덕란의원, 이동희의원, 김의식의원, 권기일의원, 정순천의원, 김대현의원, 이경호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 이동희의원, 간사에 권기일의원을 선임하여 범안로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게 되었음.

2. 활동목적

- 대구시의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국우터널구간 개통 이후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나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 매년 과도한 재정부담 등 사업 초기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수요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에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운영권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임.
- 2002년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는 범안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계획교통량 추정 및 수입금 보장의 적정성, 협약 내용 및 변경의 타당성, 자본 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금 환수방법의 적정성, 민자사업자의 자본 잠식 등 경영상의 문제점, 지산·범물지구 주민들이 부담한 범물지구~고산국도 간 도로 건설비 234억원의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현장조사 활동,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 향후 대구시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코자함.

3. 활동기간

- 2007. 1. 22 ~ 2008. 2. 29(13개월간)
- 당초기간 : 2007. 1. 22 ~ 2007. 7. 31(6개월간)
- 1차 연장 : 2007. 11. 30까지 4개월 연장
- 2차 연장 : 2008. 2. 29까지 3개월 연장

4. 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특별위원회 (7명)	위원장 위원 " " " " " "	이동희 권익식 김의관 김순천 김정호 김경대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
전문위원	4 급 5 급	하재열 안중남	'07.1.22~'07.4. 4 '07.4. 5~'08.2.29
사무원 (5명)	6 급 " " 7 급 속기사 " "	차희관 황남섭 이성대 차미영 조미영	2007.10. 5 전출 2007.10.24 전입

※ 위원 순서는 다선, 연령순임

5. 주요 활동분야

-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 및 추진상의 문제점 조사
 - 계획교통량 추정의 적정성
 - 연도별 통행료 수입 예측 자료
 -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 보장의 적정성
 - 사업자와 협약체결 내용 및 변경의 타당성
 - 자본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환수방법의 적정성
 -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 사업자 변경, 재무상태, 수입금 증대를 위한 노력 등
 - 대구시 재정지원금 현황(지원실적 및 계획)
 -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규정 등 검토
 - 유료도로 매수시 소요액 조사
 - 무상 사용기간 및 통행료 산정에 관한 자료
 - 대구시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문제점
 - 민원발생 사항
- 정확한 진상 조사와 분석을 위한 여론 수렴활동 강화
 - 공청회 개최(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
 - 무료화 관련 여론 수렴 및 관계 동향 분석
- 현장방문, 보고회 등 개최로 관련정보 공유
 - 범안로 건설관련 제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회 개최
 - 대구시의 "범안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
 - 관계기관 및 현장방문
 - 필요시 관련 기관장 출석요구, 청문실시
 - 특위 자체 간담회 활성화 및 수성구 의회와 공조유지

II. 주요활동사항

1. 회의개최

□ 제1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7. 1. 24(수) 12:00
- 장 소 :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수성구의회 관계자
- 내 용
 - 현안사항 논의
 - 수성구의회의 입장 청취

□ 제2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7. 1. 25(목) 17:00
- 장 소 : 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 내 용
 - 범안로 민자도로 건설관련 현황보고(건설방재국장)
 -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 현안사항 논의
- 주요질의답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이동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함. ○ 범안로 특위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바람. 	○ 특위개의 및 안건 상정
권기일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 관련 고시 내용 부터 마지막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되는 자료의 리스트, 출자자 변경 및 실시협약서 변경 내용, 재정지원현황, 이자부담 현황 제출 요망 	○ 자료요구
김의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 공사 사업개요, 유니버시아드 도로 사업 개요, 맥퀘리 동부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재무제표 제출 요망 	○ 자료요구
이동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시에 목적기부한 234억에 대한 서류일체, 당초 범물에서 삼덕동간 도로 개설하려 했던 계획과 계획을 취소 한 근거 제출 요망. 	○ 문서보존 기간에 따라 보관된 서류와 중요한 서류를 일체 제출토록 하겠음.

□ 제3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7. 2. 22(목) 14:00
- 장 소 : 시청 상황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외부전문가 5명, 건설방재국장, 도로과장
- 내 용
 - 범안로 건설 전반에 대해 2007. 1. 25 특위 회의시 요구한 자료분석
 -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질의답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이동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교통량을 '05.6.7 실시협약변경 때에 변경하지 않아서 시 부담 가중. ○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금으로 받은 234억원을 목적대로 투자하지 않고 민자 도로를 건설하여 시민부담 가중 ○ 사업분석 용역기간과 특위 활동기간이 불일치하므로 활동기간에 맞춰 시행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7 실시협약변경으로 통행료 수입보장률(90→79.8%) 인하 및 재정지원금을 차감(208억)하여 재정부담을 줄였음. ○ 납부받은 부담금으로는 4차순환도로 고속화도로인 범안로 건설비용으로 부족하여 234억원을 더한 총571억원의 시비를 범안로 도로건설에 투입. ○ 용역과업수행에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위한 시의회와 협의하에 용역 시행중
이경호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7 실시협약 제2회 변경시 계획교통량, 시민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과 상이한 계획교통량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7 실시협약변경으로 통행료 수입보장률 인상 및 재정지원금을 차감하여 재정부담을 줄임.
김의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와 협약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시 부담 가중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 직후 발생된 IMF 영향으로 4차순환도로가 연결되지 못하여 통행량이 계획보다 부족.

□ 제4차회의(현장조사)

- 일 시 : 2007. 3. 27(화) 14:00
- 장 소 : 도시개발공사, (주)동부순환도로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 내 용
 -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 관련 이익금 처리문제 논의 · 범안로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내역 등

□ 제5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7. 3. 27(화) 10:00
- 장 소 : 건설환경위원장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외부전문가 2명
- 내 용
 - (주)동부순환도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주)도화종합건설 기술공사에서 최근 5년간 우리시 용역 현황 등
 - 자료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제6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7. 4. 5(목)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 내 용
 - 범안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청원심사(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
 - 현장방문(삼덕요금소 등)
 - 활동기간 연장
 - 당초 : 2007. 1. 22 ~ 2007. 7. 31
 - 변경 : 2007. 1. 22 ~ 2007. 11. 30

○ 주요질문답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권기일 간사	○ 범안로 민자도로 활동기간 연장 및 전문위원 변경의 건을 동의함.	○ 동의안 의견
이 동 회 위 원장	○ 활동기간 연장 및 전문위원 변경의 건에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함.	○ 안건상정
전문 위원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보고
정순천 의원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 할 것을 동의한.	○ 청원건에 대한 동의
권기일 간사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이 유보됨을 선포함.	○ 표결

□ 제7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7. 5. 17(목) 15:0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장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 내 용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향후 특위 운영방향 논의
- ※ 연구용역 조속시행 촉구공문 발송
 - 일 시 : 2007. 6. 7(목)
 - 수신처 : 대구광역시장(건설방재국 도로과)
 - 내 용
 -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미집행
 - 6월중 계약, 10월중 용역완료
 - 대경연과 협의는 서면에 의해서 할 것 등

□ 제8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7. 7. 20(금) 11:3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장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도로과장, 대경연 관계자
- 내 용
 - 사업분석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특위활동기간까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내용에 대한 용역 완료 당부

□ 제9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7. 8. 10(금) 11:0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장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공청회 패널 4명
- 내 용 : 공청회 패널별 토론분야 협의 확정, 패널(금태남, 류병윤, 정창룡, 이진복)

□ 제10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7. 10. 26(금) 19:00
- 장 소 : 건설환경위원장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 내 용 :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기타 활동내용 논의

□ 제11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7. 10. 31(수) 13:30
- 장 소 : 경제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 내 용
 - 범안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 현안사항 논의
 - 활동기간연장 - 당초 : 2007. 1. 22 ~ 2007. 11. 30
 - 변경 : 2007. 1. 22 ~ 2008. 2. 29(3개월 연장) (사업분석 연구용역이 2008. 1. 7 까지인 것을 감안)

○ 주요질문답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이동희 위원장	○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상정.	○ 특위개의 및 안건상정
이경호 의원	○ 연구용역이 지금까지 부결된 예가 없음. 시에서 지연작 전으로 나오고 현재 여기에 매년 80억 이상 재정지원 했으며, 올해 예산에 150억 올라 왔고 후년에는 200억 까지 올라가야 되는 막대한 부분이 있는데 연구용역은 일종의 면피용임. 사업분석 연구용역과 상관없이 집행 부의 결단을 촉구해야 됨.	○ 집행부 의견 촉구
이동희 위원장	○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됨.	○ 표결
권기일 의원	○ 실시협약, 계획교통량, 범물동 주민들의 부담금 문제등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본다. 대경 연에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11월말 정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특위입장 정리 촉구
이동희 위원장	○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12월이나 전에 우리가 의회특위를 열어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특위에서 한번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용역결과 전 집행부의 공식입장 청취
이경호 의원	○ 집행부에 특위 명의로 사업주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 공문을 발송. 건설방재국에서 사업자와 매입·검토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 작년에 58억 안준 것 하고 올해 154억 하면 210억씩 이번달에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등짐지고 있음.	○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
이동희 위원장	○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전에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다가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집행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 만나서 절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함.	○ 집행부의 의지 청취

□ 제12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7. 11. 16(금) 11:00
- 장 소 : 경제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건설방재국장
- 내 용
 - 범안로 민자도로 현안사항 업무보고(건설방재국장)
- 주요질의답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이동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 추진상황 보고서에 재정지원금액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실시협약변경 차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자금재 조달에 따른 실시협약변경 차감액”으로 표현하였음은 잘못. ○ 동부순환도로(주)의 재무구조 분석한 것 없음. ○ 범안로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집행부 활동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변경 차감액은 재정지원시 차감하고 지급 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재정지원금액과 별도로 기재. ○ 예산이 속하는 연도 기준 으로 기재한 것이고 '06년도에 지급 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 재무구조 및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범안로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중.
김대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량 증가 위한 사업자, 집행부 노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량 미달은 IMF로 인하여 4차순환도로 잔여구간 미연결이 주된 원인 ○ 통행량 증가를 위해 잔여구간의 4차순환도로 건설 및 신서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적극 추진중
이경호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예측한 교통량 과다 ○ 재무구조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 도출 ○ 동부순환도로(주)의 부채 1,457억원에 대하여 대구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부족한 200여억원을 예산에 반영 하면 관리운영권을 인수 가능 ○ 재정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소송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량 , 재무구조 및 관리 운영권에 대하여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 용역 시행 중. ○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음.

□ 제13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7. 12. 27(목)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시담당부서, 범안로관계자
- 내 용
 -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 특위 최종의견 채택
 - 주요질의 내용
 - 유료, 무료화 이전에 대구시가 매입의사가 있는지?
 - 계약당시 관계 부서 담당자 출석 요구
 - 계약당시의 상황은 이해가 가나 그 이후 실시협약 변경이 두번 있었는데 운영수익, 교통량 등이 적절하게 판단되었는지 검토한적이 있는지?
 - 3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측에서 대구시에 협조하겠다고 한것에 인정하는지?
 - 특위 최종 의견 도출
 - 범안로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

○ 주요질의답변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이동희 위원장	○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하여 건설방재국장 추진상황을 보고 바람.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한 것과 부체도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첨 보고서 참조. 통행차단 시설을 2개소 설치하였고, 통행제한 경위는 차량증가와 영농활동 지장 및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것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관계는 사업분석 및 연구용역에 적극 협조 당부. ○ 교통량 증대를 위해 도로 안에 표지판설치 등 홍보 활동.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추진은 4차순환도로 조기착공과 안심-지천을 포함한 4차순환도로 건설 토록 함. 채권 최고액 추정 근거는 사업자와 금융기관간에 협의 결정된 사안임. 기타 사항은 보고서 참고 바람.
이경호 의원	○ 대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범안로를 매입할 의사가 있나 없나가 중요 함. 이미 모든 문제점이 다 나왔고 지적을 했으면 이제는 담당부서에서 매입 하겠다는 결론이 난 후 그 다음부터 예산 계획이라든지, 국비. 시비를 논의해야 할 것임. 매입의사 는 있는지?	○ 매입하면 좋은 건 당연함. 그러나 매입 방법이 문제임.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이경호 의원	○ 민자사업도 실시협약상에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전국의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대구임. 최소한 통행량이 30% 미만 나오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사업자측에서 이길 수 없음. 그래서 매입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자는 것임.	○ 통행량 판단은 당초에 대구시에서 했음. 그 당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음. 사업자와 소송을 하더라도 대구시가 통행량을 제시했기 때문에 승소율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경호 의원	○ 대구시에서 도화종합건설의 용역 부분을 100% 반영을 해서 그대로 계약 한것임. 그 당시 잘못된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방법을 찾자는 것임, 왜 매입조건에 겁을 내는지?	○ 매입조건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구시의 여건이 이런 상황과 교통량에 대한 판단을 해서 민자 사업을 요청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사항이 다르다.
이경호 의원	○ 향후에 대구시에서 지원해 줄 매입 금액이 1,000억 이상이 차이남.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 대구시의 수익차원과 민원해소 차원으로 보면 동부 순환주식회사의 주 사업자의 눈치를 볼게 아님.	○ 사업자와 최선을 다했음.
이경호 의원	○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부분에 감사원에도 지적되고 국회에서 법도 바꾸어 놓은 상태이니까 이제는 대구시에서도 이익 이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대신 운영은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대구시 재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것임.	○ 매입을 할 때 어떤 기체를 내든지 하더라도 이자로 재정보전해 주는 금액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 득이냐는 문제인데 금년말까지의 가치는 208억원이 됨. 그중 순위차입금액이 1066억, 후순위차입금액은 맥퀘리에서 투자한 금액임. 맥퀘리가 투자한 금액하고 나머지는 전부 2000억 같으면 1000억이니까 1000억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임.
이경호 의원	○ 매입할 때는 어차피 감정 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근거로 매입하는 것임.	○ 현재 대구시 재정상으로 매입할 여건이 어렵다는 것임.
권기일 간사	○ 실시계획이 2차례 변경되었음. 운영수익율, 예측 교통량, 도개공 부담금 등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올해 범안로 재정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음.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재정부담금이 예측이 되거나 파악이 되어야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돼야 할것임.	○ 재정적인 문제 의견 제시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권기일 간사	○ 그리고 용역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참고만 하고 우리 특위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함.	○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특위 입장 정리 촉구
이동희 위원장	○ 특위설치후에 대구시의 조치사항 중에서 3차에 지난 11월 20일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영권 회수시에 대구시와 협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운영권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 같음.	○ 동부순환도로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되면 환원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많이 설득을 한 것임.
이동희 위원장	○ 운영권을 회수하는데 대구시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수립 한 적이 있는지?	○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재원임. 현재의 재정운영상으로는 투자해서 매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이경호 의원	○ 전체 매입비용중에 금융 비용이 73억 정도 인데 용처를 알고 있는지?	○ 73억은 수수료부터 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회계보고서에 되어있음.
이경호 의원	○ 맥퀘리 쪽인 남부순환고속 도로에 투자사업이 맥퀘리 쪽에서 제시한 매각금액이 나와 있는지?	○ 맥퀘리에서는 없고 2007년도 12월 금액으로 해서 208억임.
이동희 위원장	○ 그동안 조사해온 특위의 결과를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함.	○ 특위의 의견을 최종 결정 집행부 통보
권기일 의원	○ 그동안 범안로 특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대구시에서 매입하여 삼덕 요금소를 무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함.	○ 동의안 제안
이동희 위원장	○ 범안로를 매입하여 삼덕 요금소 구간을 무료화 하는 최종입장이 가결됨.	○ 표결

□ 제14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8. 1. 24(목) 11:00
- 장 소 : 경제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전문위원, 시담당부서 관련자,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책임자
- 내 용 : 사업분석 연구용역 보고,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 건 처리.
- 주요질의답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이동희 위원장	○ 범안로 민자도로 특위 조사활동과 관련한 사업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건 상정	○ 특위개의 및 안전상정
이경호 의원	○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기본적인 과업지시서의 내용 9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요망.	○ 범안로 주변 교통현황 조사분석,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의 여건분석, 장래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예측, 주변 4차순환선 건설관련 계획 교통량 비교검토, 실시협약서 검토 분석, 경제성 분석, 재정지원금의 적정여부 검토, 범안로 관리 운영회사 및 관리운영 실태분석, 범안로 관련 민원 제기 사항 분석 검토, 범안로 전체 무료화 및 일부 구간 재원투입 계획, 적정교통량 유지를 위한 방안 검토중.
이동희 위원장	○ 당초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기관에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유감임.	○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용역한 데 대한 유감표명.
이동희 위원장	○ 따라서 오늘 누락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도출이 되고 일부 통계자료가 부실한 점이 보임으로 사업분석 용역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과업지시서 내용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추후 일정을 정하여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음.	○ 추후 보고회 다시 받도록 의견 제시
이동희 위원장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을 상정함.	○ 안전상정
이경호 의원	○ 청원에는 전구간의 매입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단지 재정부분 즉 예산이 없다는 논리와 매년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논리만 펴고 있음.	○ 집행부 재정부분 적극 검토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정순천 의원	○ 이 자료가 언제 시에 대경연에서 도착 했는지?	○ 1월 7일 보고서가 도착됨.
정순천 의원	○ 21일자에 분명히 집행부로 부터 용역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음. 그런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했음.	○ 정식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지.
정순천 의원	○ 대경연에 알아보니 용역보고서를 시에 벌써 도착 시켰다고 함.	○ 1월 7일자로 용역이 납품 되었으며 요약 보고서를 받았음.
이경호 의원	○ 이 용역 책자는 오늘 아침 10시에 책상에 갖다놓은 것을 보았는데 1월 7일자로 배포 하지 않은 이유는?	○ 용역 결과 보고서 검토
이동희 위원장	○ 요구자료를 부탁드렸는데도 당일 도착해서 검토할 시간도 없는 상태이며 부득이 다음으로 연기한 날짜에 보고하게 되었고 좀 당황스럽다.	○ 요구자료 검토 시간 부족
김대현 의원	○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건은 육상대회등과 접근성 문제로 야구장, 미술관등과 연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봄.	○ 주변도로의 건설문제와 종합적인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는 드리겠지만 연계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김대현 의원	○ 삼덕요금소 폐지는 옆에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돔야구장이 인근에 결정이 되었고, 시립미술관등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므로 삼덕요금소는 이러한 것들과 연계를 해서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운동장 접근 문제는 무열로에서 고산국도간 2011년 까지 개통을 다 해서 높이도 록 하고 그외 도시계획은 없음. 미술관 진입로도 당초에 폭 50M에서 25M만 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리고 영남일보에서 시민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무료화는 21%이고,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78%의 여론임.
이경호 의원	○ 여론조사 할때 지하철 3호선을 월드컵경기장 앞으로 당길 수 없는 이유도 했는지? 민자도로 때문에 월드컵경기장까지 3호선 구간을 연장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범안로가 있는한 주변의 도로는 개설을 못하고 있음.	○ 지하철 3호 선을 월드컵경기장 앞으로 당길 수 없는 이유도 이야기 했음.

질의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이동희 위원장	○ 용역보고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많음.	○ 없 음
권기일 간사	○ 여론조사가 21%, 78%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영남일보가 자체에서 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의뢰한 것인지?	○ 영남일보 자체에서 실시한 것임.
권기일 간사	○ 범안로에 재정부담금을 매년부담해야 하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그다음 정책은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카스가 빛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고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무료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음.	○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음.
김대현 의원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는 구간 무료화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본 청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함.	○ 청원 의견서 채택

□ 제15차회의(간담회)

- 일 시 : 2008. 1. 29(화) 10:30
- 장 소 : 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자문위원 5명, 전문위원
- 내 용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사전 검토 의견 청취
 - 최종 보고회 일정 확정 등

□ 제16차회의(보고회)

- 일 시 : 2008. 1. 31(목) 10:00
- 장 소 : 경제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7명, 시관계자, 전문위원
- 내 용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보고회, 활동보고서 채택

○ 주요질의답변

질의자	질 의	답 변
권기일 의원	<p>○ 대구시가 매입하는 경우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단순 비교하면 재정지원금은 4,576억원이고 무료화를 제외하고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지?</p> <p>○ 지산·범물지구 주민들 청원과 같이 무료화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더 유리한데 이 부분도 인정하는지?</p> <p>○ 대구시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대경연 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분석결과가 없음. 단순 비교하기에도 지금 재정 지원금만 보더라도 조금만 더 보테면 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p>	<p>○ 예.</p> <p>○ 예.</p> <p>○ 현 재정상태는 대구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경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외한 것임. 자금운용과 편성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람. 2,008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매입이 유리하지만 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림.</p>
이동희 위원장 이경호 의원	<p>○ 특위와 협의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제외했다고 했는데 특위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p> <p>○ 용역결과에 보면 무료화할 경우 범물지구 내 통행량 증가로 비용이 60억원 가량 증가한다고 한 근거는?</p> <p>○ 70 페이지에서 통행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는?</p> <p>○ 교통량이 많으면 혼잡한 교통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범안로 때문이라는 것은 아는지?</p> <p>○ 실시협약에는 운영수입 보장기간 동안 운영비가 불변가격으로 돼 있음. 비용이 2,000억원이 넘으므로 통행량이 30% 밖에 안 되므로 운영비를 70% 줄이면 그 절감비가 1,000억원이 넘음, 이러한 내용이 용역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봄.</p>	<p>○ 대경연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재원 조달계획은 시에서 해야 할 것이므로 제외한 것임.</p> <p>○ 무료화시 지산·범물 지구로 통행량을 분산해서 분석한 결과로, 무료화되면 통행량이 이 곳으로 집중화될 것으로 보여 지·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0억원 정도로 추정됨.</p> <p>○ 장래에 갈수록 통행량이 줄어든다는 것임.</p> <p>○ 예.</p> <p>○ 이러한 내용은 실시협약서에 관한 것임.</p>

질의자	질 의	답 변
김대현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도로의 매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로와 관련하여 전혀 관련 없는 시민의 세금이 현재 150억, 향후 300억원 이상 지원돼야 하는데 문제가 있음. 본 용역에서 주변도로 개설이 안 되는 등의 비용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 서재 택지개발 지역, 죽곡 택지개발 지역 등의 계획이 범안로 통행량에 반영된 것인지? ○ 이들 택지 주민들과 범안로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목적은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므로 시전반에 걸쳐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음. ○ 예, 일정 비율에 따라 반영된 것임. 도로 네트워크로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량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임. ○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통행비용은 범안로 뿐만 아니라 전체 도로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것임.
이동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 통행은 무료화할 때 대구시 전체 통행량과 관계되고, 시전체의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뜻인지? ○ 범안로 주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 1일 통행량을 조사해 본 결과, 조사자의 약 70%가 지산·범물·파동 주민이고, 30%가 다른 지역 주민임. 이러한 기초 영향 분석도 없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 시나리오는 항상 여러 대안을 두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유리한 분석만 한 것으로 보임. ○ 장래 범안로 주변 교통수요 추정치의 산정 근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범안로 이용자는 주로 지산, 범물 주민으로 봄. 도로 분석 방법은 특정 지점과 전체 네트워크 분석의 2가지 방법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음. 장래 4차순환선 개통시를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것임. ○ 현황에 대해 분석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님. 네트워크 분석시 범안로 지점과 유사한 다수 지점을 분석하였음. ○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이용한 것임.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등에 활용되는 자료로 국가기관이 내놓은 공신력 있는 자료임.
정순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 관련 사안은 중요한 것임에도 대구시에서는 과거에 이뤄진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이경호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안로와 관련해서 건설당시 용역결과로 인해 대구시에 손실을 입힌 바 있는데 이번과 같이 특위 이후에 나온 용역연구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책임은 대경연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건설시 시행한 용역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당시 지표를 활용한 것이고, 대경연의 용역은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 이 의견을 참고해서 대구시가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봄.

질의자	질 의	답 변
	<p>○ 언제가 범안로 매입의 적기라고 보는지?</p> <p>○ 대구시의 의견과 특위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집행부의 대책은?</p>	<p>○ 2011년에서부터 교통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 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음. 어려운 문제는 의회와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음.</p>

2. 청원사항 심사처리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심사보고)

○ 제출과정

- 제출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1336번지 태성맨션 106동 911호 박실경 외 29,306명
- 제출일자 : 2007년 1월 25일
- 소개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원

○ 검토과정

- 회부일자 : 2007년 3월 30일
- ※ 2007. 1. 25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 2007. 3. 30 본 특별위원회로 소관 위원회 변경
- 검토기간 : 2007년 3월 30일 ~ 2007년 4월 4일
- ※ 제159회 임시회(2007. 4. 5) 에서 대구시의 범안로 관련 분석용역 완료시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청원 심사 유보함.

○ 심사과정

-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4. 5) : 심사유보
- 대구광역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10. 31) : 특위 활동기간 연장
- 대구광역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 (2008. 1. 24) : 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

○ 청원내용(요지)

- 수성구 범물 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대구시 민자사업 유료도로인 범안로는 수성구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자산범물택지개발 사업 시행 당시 자산·범물 입주민들이 234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이 도로개설부담금은 현재의 자산 가치로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범안로 총사업비 2,254억원에 비추어 볼 때 기여한 역할이 매우 크므로
- 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삼덕요금소의 폐지를 청원함.

○ 소개의견(요지)

- 범안로 개요
 - 범안 ~ 안심간 7.25km 구간, 총사업비 2,254억원 (민자 1,683, 시비 571)
 - 요금(승용차 기준) : 삼덕요금소 500원, 고모요금소 600원
 - 현재 통행료 수입부족에 따라 매년 60~80억원을 시비로 보전하고 있음
- 범안로는 2002년 개통이후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민자업체가 2006년까지 24년간 요금 을 징수할 예정이나,
 - 현재의 통행량이 계획통행량 대비 37%수준이어서 부족분에 따른 재정지원 보전금으로 매년 60~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므로 유료도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함.
 -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 전액을 우선 변제하고 매년 보전해야 할 금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
 -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도 고모요금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민자사업에 대한 의미는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고모요금소를 통한 징수액으로 범안로 유지보수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역 주민들이 92년과 93년의 택지개발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약 922억원이며, 93년도에 현금 기부한 234억원은 범물동에서 고산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용 목적기부였는데, 범안로가 바로 이 목적구간과 동일한 구간이며, 삼덕요금소 통행량의 80%정도를 이용하는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함
대구시의 4차 순환선 운영을 함에 있어 1개 구간 당 1개 인터체인지(요금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인터체인지로 나온 이용객은 2분도 안되어 범안로 고모요금소에서 요금을 낸 후 3분쯤 지나 삼덕요금소에서 다시 요금을 내고, 약 2분쯤 지나 달서구로 가는 새로운 민자 도로에서 요금을 내야 할 것임(약 10분간 3차례의 요금 징수).
 - 대구월드컵 경기장과 대구시립미술관 등 문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삼덕요금소는 폐지되어야 함.
 - 유료도로의 경우 통상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를 개설하여 운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범안로의 경우 인근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된다고 항의하자 도로를 막아서 일반차량은 통행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 검토보고 요지(보고 : 건설환경 전문위원 하재열)

- 먼저, 청원인의 청원사유를 보면,
 - 범안로는 범물에서 안심간 7.25km 구간에 총사업비 2,254억원 (민자 1,683, 시비 571)을 투입하여 5년간의 공사기간으로 2002년도에 개통된 유료도로로서,
 - 통행료는 2002. 9. 1부터 현재까지 승용차기준으로 살펴보면 삼덕요금소(안심쪽)에서 500원, 고모요금소(안심쪽)에서 6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4년간 징수할 예정임.
 - 또한, 현재의 통행량이 계획통행량 대비 37% 수준이어서 부족분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보전금 규모가 매년 60~80억원 정도가 되므로 대구시의 재정 압박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료도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 전액을 우선 변제하고 매년 보전해야할 금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
 -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도 고모요금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민자사업에 대한 의미는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고모요금소를 통한 징수액으로 범안로 유지보수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이 92년과 93년의 택지개발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약 922억원이며, 93년도에 현금 기부한 234억원은 범물동에서 고산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용 목적기부였는데, 범안로가 바로 이 목적구간과 동일한 구간이며, 삼덕요금소 통행량의 80%정도를 이용하는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 대구시의 4차 순환선 운영을 함에 있어 1개 구간당 1개 인터체인지(요금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인터체인지로 나온 이용객은 2분도 안되어 범안로 고모요금소에서 요금을 낸 후 3분쯤 지나 삼덕요금소에서 다시 요금을 내고, 약 2분쯤 지나 달서구로 가는 새로운 민자 도로에서 요금을 내야 할것임(약 10분간 3차례의 요금 징수).
- 대구월드컵 경기장과 대구시립미술관 등 문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삼덕요금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료도로의 경우 통상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를 개설하여 운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범안로의 경우, 인근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된다고 항의하자 도로를 막아서 일반차량은 통행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함.
- 다음, 범안로의 건설배경 등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 본 민자도로는 '96년, '97년도에 지산, 범물, 시지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월드컵 경기장의 각종 국제대회(대륙간컵, 월드컵축구대회, 세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를 대비하여 연결도로망 구축이 시급하여 부득이 민자를 유치하여 조기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 범물동에서 동구 율하동까지 폭 35~50m, 길이 7,250m 규모로 2,254억원(민자 1,683 시비 571)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7년 10월 22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대구동부순환도로(주)를 시행자로, 코오롱건설(주) 외 6개사가 시공사가 되어 추진하였음.
- 일정별 범안로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 94. 8. 3 : 민자유치 촉진법 제정공포
 - 95. 5.20 : 대구광역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공포
 - 96. 2 : 제1회 민자유치 전략 세미나에 설명회개최
 - 96. 3.26 : 민자유치 도로사업 설명회 개최
 - 96. 7.10: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대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96. 8. 8 :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쌍용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2개컨소시엄 입찰참여
 - '97. 4.12 :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 '97. 4. 21 : 실시협약 체결
 - '97. 8. 7 : 민자유치 실시계획 승인
 - '97. 10.22 : 공사착공
 - '01. 5.15 : 범물~달구벌대로구간 개통(통행료징수:10. 5)
 - '02. 3. 13 : 실시협약 변경(법개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02. 5. 23 : 달구벌대로~안심구간 개통(범물~안심간 전구간 개통)
 - '02. 6. 27 : 관리운영계획 승인(전구간)
 - '02. 6. 29 : 사용료 신고 및 승인(전구간)
 - '02. 6. 27 : 관리운영계획 승인
 - '02. 6. 29 : 사용료 신고 및 승인(전구간)

- '02. 8. 24 : 준공
- '02. 9. 1 : 전구간 개통 요금징수 실시
- '05. 6. 7 : 출자자 변경 및 실시협약서 변경
- 출자자 : 코오롱건설(주)외 5개사 →맥쿼리대구동부순환도로 투자(주)
- 실시협약 변경사항
 - ┌ 당초 :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계획교통량의 90%, 20년
 - └ 변경 :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계획교통량의 79.8%, 20년
- 통행량 및 대구시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 통행료 징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거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실시협약 제41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구간별, 차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통행료 (vat 포함)	영업소별 통행료	
		삼덕	고모
소 형	1,100원	500	600
대 형	1,500원	700	800

또한, 통행료의 징수기간은 「실시협약 제40조」 규정에 의거 운영개시일로부터 24년간(2002. 9. 1 ~ 2026. 8. 31)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계획통행량(63,571대/일) 대비 1일 평균 19,235대로 약 30%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삼덕영업소(범물~달구벌대로간) : 1일평균 24,702대
- 고모영업소(달구벌대로~안심간) : 1일평균 13,767대

※ 구간별 개통 및 통행료징수 개시현황

- 범물~달구벌대로구간 (L=4.05km)
 - 개통일자 : 2001.5.15(대륙간컵 축구대회 대비 조기개통)
 - 통행료징수 : 2001.10.5
- 달구벌대로~안심국도구간 (L=3.20km)
 - 개통 일자 : 2002.5.23(월드컵축구대회 대비 조기개통)
 - 통행료징수 : 2002.9.1

· 지금까지 대구시의 재정지원 현황은2003년도에 33억 6,000만원, 2004년도에 121억원 등 현재까지 총 281억원을 지원하였음.

(단위 : 억원)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 고
281.34	33.6	121	42.94	83.80	

- 본 청원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 용역비 5천만원으로 범안로 구간 7.25km 전역에 대하여
- '07.2.15~2.26까지 사단법인 한국원가정보연구원에서 사업분석 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이미 실시완료하였고,

- 범안로 및 주변 토지이용분석과 교통현황 조사분석, 장래 교통수요 및 통행료수입 예측, 교통현황 분석, 경제성 분석, 범안로 전구간 무료화 검토분석 및 대책 방안,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 검토 및 대책방안 등을 주요 과업내용으로 포함하여, 4월중에 착수하여 금년 10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 본 청원인의 요구내용인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포함한 범안로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제반 문제점, 시의 재정지원현황, 통행량 조사, 현재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제조사코자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본 청원사항과 관련한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음.
- 청원의 심사는 「대구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에 의거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본 건 청원은 대구시 용역의 결과분석과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판단 되어짐.

○ 질의·답변 요지

-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특별위원회(2007. 4. 5) :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10. 31) :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8. 1. 24)

질 의	답 변
○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삼덕요금소의 무료화 보다는 전 구간 매입이 선행돼야 하겠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매입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대구시에서는 재정 문제로 매입은 어렵고 매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않고 있음.	○ (없음)
○ 삼덕요금소 폐지청원의 건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돔 야구장, 시립미술관 등 접근성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육상대회를 대비하여 운동장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열로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해소할 예정임. 참고로 최근 영남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무료화 20%, 기존 유지 80% 정도의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그 조사는 시에서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인지?	○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임.

○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중 제1차(2007. 4. 5)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과 관련 본 청원에 대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특위활동 종료시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를 유보함.
- 대구광역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 (2007. 10. 31) : 토론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 (2008. 1. 24)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결과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므로
 -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위의 결론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함.

○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재석위원 전원 찬성)
- ※ 의견서 : 붙임 참조

〈의견서〉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은 대구시 민자사업 유료도로인 범안로의 수성구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산범물택지개발 사업 시행 당시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234억원을 부담하였고, 이 도로건설부담금은 현재의 자산 가치로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범안로 총사업비 2,254억원에 비추어 볼 때 기여한 역할이 매우 크므로 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지우는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삼덕요금소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임.
-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본 청원의 건에 앞서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2007. 1. 19)·운영한 결과 사업비 2,254억원(시비571억원, 민자1,683억원)을 투자하여 '02년 8월 개통한 범안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대구시가 추정한 계획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15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20년간 재정지원 규모가 5,151억원에 달하는 등 행정의 신뢰 실추 및 대구시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도로건설 과정에서 계획통행량 추정, 협약서 변경 등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범안로와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지출(2007년 이후 매년 158억~511억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안로를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 보다는 매입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재정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매입가능 방안이 있다는 점, 협약서상 운영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운영회사에서 매수 협의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구시에서 범안로 전 구간을 매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범안로 관련사업 분석 연구용역 결과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함.

3. 공청회 개최

□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방안 공청회

- 일 시 : 2007. 8. 23(목) 15:30
- 장 소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 주 최 : 대구광역시의회
- 참 석 : 지역주민 등 400명
- 진행순서
 - 개회사 (이동희 범안로특위위원장)
 - 축 사 (장경훈 시의회 의장)
 - 주제발표 및 토론(관계전문가 8명)

※ 전문가 패널 : 8명

- 대구대학교 최병두 교수, 매일신문 정창룡 부장,
- 수성구의회 금태남 의원, 보람회계법인 이진복 대표,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병운 실장,
- 동부순환도로(주) 이종남 대표,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대구시지회 박호경 지회장, 대구광역시 강경덕 건설방재국장

○ 내 용

-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 범안로 실시협약서 문제점 검토
- 도시내 유료도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
- 범안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회계분야)
- 대구시 도로정책 관점에서 본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방안

○ 공청회 자료집 : 별책

4. 집행부 주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1>

- 보고일시 : 2007.11.16(금) 11: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보 고 자 : 건설방재국장

가. 범안로 민자도로 일반현황

1) 민자사업 추진상황

□ 추진배경

- '01년 컨페레레이션컵 · '02년 월드컵 · '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 및 대규모 택지 조성, 고산국도 및 안심국도 교통체증 심각으로
- 도심통과교통 외곽 분산처리를 위한 지역간 연결 간선고속화도로망 구축이 시급하였으나,
- 한정된 시 재정여건상 적기에 도로건설이 어려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로(범안로) 건설
- ※ 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적극 장려하는 시대적 상황이었음
- ※ '95. 2. 22 : 월드컵경기장 건립 기본계획 확정(수성구 내환동 체육공원 내)

□ 사업개요

- 위 치 : 수성구 범물동 ~ 동구 율하동
- 사업규모 : B=35~50m, L=7,250m (3차로×2)
 - 범물 ~ 달구벌대로 (삼덕요금소) 구간 : 4,050m,
 - 달구벌대로 ~ 안심국도(고모요금소) 구간 : 3,200m
- 사 업 비 : 2,254억원(민자 1,683억, 시비 571억)
- 사업기간 : '97. 10. 22 ~ '02. 8. 24
- 사업시행자 : 대구동부순환도로(주)

2) 추진현황

- 제5차 대구 도시재정비계획('87. 5월) : 2000년대를 전망하여, 4차순환도로에 지역간 연결·도시고속화 도로·시가지 우회기능 부여
- '96. 5. 30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방침결정
- '96. 7. 10 : 지방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96. 8. 8 :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고시
- '96. 12. 13 :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96. 12. 14 ~ '97. 3. 6 : 협상실시(7회)
- '97. 4. 9 : 실시협약(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97. 4. 2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97. 10. 22 ~ '02. 8. 24 : 공사 시행
- '02. 9. 1 : 전구간 개통 및 통행료 징수 개시

통행료징수기간	'02. 9. 1 ~ '22. 8. 31	무상사용
통행료	· 삼덕요금소 : 경차 300원, 소형 500원, 대형 700원 · 고모요금소 : 경차 300원, 소형 600원, 대형 800원	경차 : '03. 8. 11.부터
관리운영권자	대구동부순환도로(주)	

3) 통행량 현황

(단위 : 대/일)

구 분	'02년 (9.1일부터)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0월까지)	
계획교통량	53,733	56,036	58,443	60,953	63,571	66,303	
실 제 교통 량	계	21,940	20,685	19,018	19,530	19,235	19,020
	삼덕구간	31,727	28,383	22,764	22,629	24,702	26,169
	고모구간	12,154	12,988	15,272	16,430	13,767	13,338
비 율 (%)	40	40	33	32	30	29	

나.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지원현황

1) 연도별 지원실적

○ 재정지원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년 부족분 '03년 지원	'03년 부족분 '04년 지원	'04년 부족분 '05년 지원	'05년 부족분 '06년 지원	'06년 부족분 '07년 지원
통행료수입계획		1,025	67	217	234	246	261
보 장 통행료 수 입	계	881	60	195	211	207	208
	90% ('02.9.1부터)	559	60	195	211	93	-
	79.8% ('05.6.1부터)	322	-	-	-	114	208
실제통행료수입		305	26	74	68	69	68
자금재조달에 따른 실시협약변경 차감액		208	-	-	100	54	54
재정지원금액		368 (지급:311)	34	121	43	84	86 (56지급유보)

- ▶ 통행료 징수기간 : '02. 9. 1 ~ '26. 8. 31(24년간)
- ▶ 재정지원기간 : '02. 9. 1 ~ '22. 8. 31(20년간)
- ▶ 특정연도 통행료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특정연도의 익년도에 재정지원

2) 향후 지원계획

- 향후의 재정지원규모는 교통량 추이에 따라 유동적임
-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향후의 교통량을 심도 있게 재추정 분석하는 등 재정지원규모를 포함하여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므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

3) 2008년도 예산요구 금액

□ '08년 지원대상금액 : 154억원

- 요구내역
 - 통행료수입 예상액 : 271억원
 - 보장통행료수입 : 222억원(보장률 79.8%)
 - 실제통행료수입 : 68억원('06년도 수준)
 - 재정지원금 예상액 : 154억원
- ※ 재정지원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본 사업 실시협약서 제45조 제2항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기간동안 매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추정통행료 수입의 79.8% 보장)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함

다. 민자사업자와 협의추진상황(2007년 이후)

1) 추진현황

- 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간담회 및 협의
-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07. 8. 23)
- 언론대담 3회(KBS 목요진단 2회, MBC 시사토론 1회)
- 민간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와 협의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시행(‘07. 7. 11~’08. 1. 7)
- 기획예산처, KDI, 회계법인, 타 시도 등과 협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 등 관련사항

라. 범안로 적자부분 해소 추진상황

1) 재정지원 축소를 위한 조치

□ 출자자 및 실시협약 변경(‘05. 6. 7)

- 출자자 변경(자금재조달)
 - 코오롱컨소시엄(건설투자자) → 맥쿼리대구동부순환도로투자.주(재무적투자자)
- 실시협약 변경
 - 대구시가 국민은행에 ‘00. 6. 2. 보증한 대출약정(1,365억원) 보증채무를 해지(‘05. 6. 15)
 - 주식 매매차익 208억원을 통행료수입 부족분 재정지원시 차감하여 시 재정 절감(‘05년 100억, ‘06년 54억, ‘07년 54억)

※ 주식 매매차익은 우리시가 공유할 대상은 아니나, 민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유한 것임

- 주식 매매차익 총 238억원[(7,000원-5,000원)×11,880천주] 중
- 대구시 : 208억원[(7,000원-5,250원)×11,880천주] 공유
- 민간사업자 : 30억원[(5,250원-5,000원)×11,880천주] 공유

2) 통행량 증가를 위한 조치

- 범안로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당시는 지천~읍내구간을 제외한 4차순환도로 전구간이 ‘04년까지 개통 및 주변에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는 계획하에 교통수요 예측되었으나, ‘97. 11월의 IMF 영향으로 4차순환도로 잔여구간 미연결, 주변의 대규모 개발 지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에 의해 통행량이 계획에 미달되고 있어, 통행량 증가를 위해
-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연결(‘12년 완료)
 - ‘07. 6. 18. 실시협약 체결,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고시 준비 중, 연내 착공
- 안심~지천을 포함한 4차순환도로 전 구간 연결(‘20년 완료)
 - 안심~지천 구간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07. 6. 30),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
 - 성서~지천 구간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건교부/민자사업)
- 혁신도시(신서택지) 개발(‘12년 완료)
 - ‘07. 4월 실시계획 고시, 사업 시행 중(4차순환도로, 범안로와 연결, L=1.2km) 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3) 합리적인 운영방안 조치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중

-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기타 과업지시서상의 요구사항 등 범안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층 연구 분석 중에 있음

마. 민자사업자의 자본금 현황

1) 연도별 손익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비 고
수익	통행료수입 등	6,024	7,375	6,776	6,957	6,781	
	재정지원금	-	3,360	12,100	4,294	7,541	
	기타수익	97	131	272	748	609	
	수익 합계	6,121	10,866	19,148	11,999	14,931	
비용	이자비용	4,284	7,998	7,252	10,241	13,056	
	금융수수료	-	-	-	7,342	145	
	운영권 상각	3,607	6,637	6,637	6,637	6,637	
	운영비용	1,673	2,010	1,955	2,639	2,442	
	기타비용	1	34	1,152	617	1,691	
	비용 합계	9,565	16,679	16,996	27,476	23,971	
당기순이익(수익-비용)		- 3,444	- 5,813	2,152	- 15,477	- 9,040	

2) 연도별 자본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비 고
자 산 총 계		162,201	156,258	161,466	154,645	145,470	
부 채 총 계		107,456	107,574	107,492	145,849	145,714	
자본	불입자본금	59,400	59,400	59,400	29,700	29,700	
	이익잉여금 등	- 4,656	- 10,715	- 5,427	- 20,905	- 29,945	
	자본총계	54,744	48,685	53,973	8,795	-245	

바. 사업분석 연구용역 추진상황

- 범안로 통행량이 계획의 30% 수준으로 시 재정지원 부담 과중
 - 범물 주민·수성구의회·시의회에서 범안로 통행 무료화 요구
 -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1) 용역개요

- 용역명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 용역금액 : 48백만원
- 용역기간 : 2007. 7. 11 ~ 2008. 1. 7
- 용역기관 : (재)대구경북연구원

2) 추진상황

- '07. 1~ 7 : 용역 입찰방법 검토, 시의회 협의 등 발주 추진
- '07. 7. 11 : 용역 착수
- '07. 7~ 8 : 관련 계획 및 자료 수집·분석

※ '07. 8. 23 :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의회 주관)

- '07. 8. 28 : 1차 자문회의
- '07. 9. 28 : 교통량 현장조사
- '07. 11월 현재 : 교통수요 재추정 및 경제성 등 분석 중

3) 향후계획

- '07. 11월 : 2차 자문회의 개최
- '07. 12월 : 중간성과 제출
- '08. 1. 7 : 용역 완료
- '08년 ~ : 합리적 운영방안 결정

사. 대구시 민자도로 건설현황

1) 사업개요

사 업 명	4차순환도로 (국우터널 및 진입로) 건설공사	4차순환도로 (범물지구~안심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민간투자시설사업	
사 업 규 모	L=1,680m - 터널 : 370m (3차로×2) - 진입로 : 1,310m	B=35~50m L= 7,250m	B=35~60m L=10,440m	
사 업 비	523억원 - 민자 494억원 - 시비 29억원	2,254억원 - 민자 1,683억원 - 시비 571억원	3,624억원 - 민자 2,444억원 - 시비 835억원 - 국비 345억원	
사 업 기 간	'95. 8. 16 ~ '98. 7. 7	'97. 10. 22 ~ '02. 8. 24	착공일로부터 5년간 ('07. 12월 ~ '12. 12월)	
사 업 시 행 자	민자3사(보성,화성,두산)	대구동부순환도로(주)	대구남부순환도로(주)	
관리운영권자	군인공제회 ('00. 4. 1)	"	-	
통행료 징수기간	'99. 8. 1 ~ '12. 7. 31 (13년간)	'02. 9. 1 ~ '26. 8. 31 (24년간)	26년간	
'06년 통행 량	계획(대/일)	51,389	63,571	-
	실제(대/일)	48,450	19,235 (범물~달구벌대로 24,702, 달구벌대로~안심국도 13,767)	-
	비율(%)	94	30	-
비 고	도로법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및 유료도로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의해 시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	

※ 매천로(농수산물 도매시장 ~ 구마지선간 제2팔달로 민자구간)

-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였으나, (폭 35~65.6m 연장 1,270m, 548억원, '97. 10. 22 ~ '03. 4. 30)

- 4차순환도로가 아닌 일반 간선도로로서,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유료 통행되어 재정사업으로 전환

2) 추진현황

□ 국우터널 구간

- '94. 12. 1 : 사업자 모집공고(고시사업)
- '95. 7. 14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95. 8. 16 : 공사 착공
- '98. 7. 7 : 공사 준공(무료개통)
- '99. 8. 1 : 통행료징수(소형 500원, 대형 600원)
- '03. 8. 11. 경차요금 징수(300원)

□ 범안로 구간

- 'I. 범안로 민자도로 일반현황'의 추진현황과 같음

□ 상인~범물 구간

- '03. 7. 1 : 민간투자사업 제안
- '06. 11. 14 :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완료
- '07. 1. 12 : 시민단체 공동협의회 운영
- '07. 6. 18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7. 10월 : 편입 토지 보상(40.3억원)
- '07. 10. 10 ~ 11. 6 : 실시계획 사전 열람
- '07. 12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 '08년 ~ : 공사 시행

<보고사항 2>

- 보고일시 : 2007. 12. 27(목)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보 고 자 : 건설방재국장

가. 부체도로 이용에 관한사항

□ 부체도로 통행허용요구

- 범안로 양측의 부체도로에 잠금장치와 돌출부분이 설치되어 있어 범물지역 주민 차량통행이 불가하므로 통행허용 요구

□ 부체도로현황

- 구 간 : 범물동 관계삼거리 ~ 달구벌대로
- 규 모 : 폭 3 ~ 6m, 연장 7.5km(3.75km×2열)
- 통행차단시설 : 2개소(범물→안심방향 1, 안심→범물방향 1)

□ 통행제한경위

- '01. 10. 18 : 부체도로를 이용 차량이 증가함으로서 영농활동에 지장 및 교통사고 위험 있어 민원발생
- '02. 3. 18 : 민원에 의한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부체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 '02. 4. 1 : 차량통제 삼덕동 주민 집단민원제출(82명)
- '02. 5. 3 : 부체도로 통행제한방안을 지방경찰청과 협의 및 주민 설명회 개최한 후 부체도로 통행차단시설 설치
 - ※ 주민차량 통행허용하고 외지차량 통행금지토록 조치
- '02. 5. 13 : 부체도로의 통행제한 방안을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한 후 통행

□ 민원요구에 대한조치

- 범안로 부체도로는 도시고속화 및 지역간 연결 기능의 4차순환도로(범안로) 건설로 인한 기존 부락의 통행과 영농활동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서
- 지역주민의 영농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통제요청 집단 민원에 의하여 관계구청·경찰청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외부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였으며,
- 외부차량 통행허용시 또다시 심각한 혼란과 교통사고 위험 및 영농활동 지장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 우려됨

나. 특위설치 후 조치한 사항

□ 민간사업자(대구동부순환도로)와 협의

- 1차('07. 7. 5, 도로과 사무실)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에 적극 협조
- 2차('07. 11. 1, 건설방재국장실)
 - 연구용역의 공정한 분석 자료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신뢰 및 적극 협조
- 3차('07. 11. 20, 건설방재국장실)
 -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영권회수시 대구시와 협의 노력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시행

-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등 범안로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 운영방안을 노력 중

□ 기획예산처, KDI, 회계법인, 타 시도 등과 협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 등 민자도로 운영 관련사항

다. 교통량 증대를 위해 조치한 사항

□ 운영개선사항(민간사업자)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 범안로 주변('05년)
 - ▶ 안 심 로 : 신설 2개소(대형 문형식), 교체 1개소
 - ▶ 범 안 로 : 신설 1개소(편지식), 교체 7개소
 - ▶ 달구벌대로 : 신설 1개소(편지식)
 - 범안로 내부('02~'04년)
 - ▶ 연호고가교 측면, 연호고가교 진입부, 범물시점, 안심종점 등
 - ▶ 이미지 홍보 표지판 부착 : 가로등에 “아름다운 길 범안로” 간판 설치(18개소)
- 범안로 홍보 : 교통방송, 전광판등 활용

□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추진

- IMF 영향으로 4차순환도로 잔여구간 미연결, 주변의 대규모 개발 지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에 의해 통행량이 계획에 미달
- 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 조기착공
- 안심~지천을 포함한 4차순환도로 전 구간 건설추진
- 혁신도시(신서택지) 조성 및 주변개발 추진

라.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사항

□ 근저당 설정 근거 및 설정사유

- 설정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및 범안로 실시협약서 제72조(자금의 차입 등과 대구광역시의 협조)
- 설정사유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관리운영권을 근저당 설정
- ※ 근저당권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일정기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

□ 근저당권자별 채권최고액

(단위 : 억원)

구 분	최대약정금액			채권최고액 (약정금액의 130%)	지분비율(%)
	선순위	후순위	계		
계	1,940	399	2,339	3,040.7	100
신 한 은 행	1,940	-	1,940	2,522	82.94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	339	339	440.8	14.5
대한생명보험	-	60	60	77.9	2.56

※ 실제 차입금액 : 1,443억원(선순위 1,066억 후순위 377억)

※ 근저당권설정계약 : 2007. 3. 13

□ 채권최고액 결정근거

- 채권최고액 결정은 채무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 '07. 3. 1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2개사(대한생명보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 근저당물(범안로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의 가치와 채무자의 변제능력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이 협의 결정한 사안임

□ 대출기관, 설정자, 근저당권자, 설정구간 등

- 근저당권자(대출기관) : (주)신한은행,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대한생명보험(주)
- 채무자겸 근저당 설정자 : 대구동부순환도로(주)
- 설정구간 : 수성구 범물지구 ~ 동구 안심국도간(7.25km)

※ 근거서류

설정계약서, 등록원부, 신청서류, 방침결정서류, 승인서류 사본
전문위원실-1279(2007. 6. 26)호에 의하여 위 관련서류를 제출된바 있음

마. 자금제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금 환수관련

□ 공유이익금 발생사유

- 자본금 일부를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자금제조달)함으로써 이자비용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 '자금제조달 이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되므로,
- 그 증가이익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의 자금제조달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으로 공유함으로써 공유이익이 발생
- ※ 주식매매차익금(208억원) : 이익공유대상은 아니나,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 공유이익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유하여 재정지원금을 차감

□ 자금제조달 이익 처리방안 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처리방안	운영수익보장 비율 축소	사용료(통행료) 축소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제조달 규정 부합 · 자금제조달 이익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사업자가 공유 · 정부재정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제조달 규정 부합 · 자금제조달 이익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사업자가 공유 · 정부재정부담 변경 없음
채 택 안	○	

□ 공유이익 환수 방안별 비교

구 분	제 1 안	제 2 안
환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분할 환수하되, 연간 운영수익 보장금(재정지원금)에서 공제 2005년 : 100억원 2006년 : 54억원 2007년 : 54억원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분할 환수하되 현금 환수 2005년 : 100억원 2006년 : 54억원 2007년 : 54억원을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재정지원금액이 축소되어 민자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 대응 용이 - 동부순환도로의 자금 유동성 다소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재정에 도움이되나 민자사업에 재정지원금이 많아 시민여론 부담 - 현금을 환수 할 경우 동부순환 도로의 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문제발생 → 추가적인 대출 등이 필요함
채 택 안	○	

□ 자금제조달 검토의견

- 삼일회계법인 의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적정반영
- 주무부서 의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적정시행

□ 자금제조달 비용 소요액

- 금융수수료로 7,342백만원 소요(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 ※ 전문위원실-1279(2007. 6.26)호 자료요구('07. 6. 21),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중 범안로 민자도로 현안사항 업무보고시 자료요구('07. 11. 16)에 의하여 위 관련서류를 제출

바. 자본금 잠식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자본 관련사항

□ 자기자본금 유지비율

- 대구시기본계획(범안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신청자는 총민간사업비에서 이윤을 제하고 예비비(물가변동비 및 물량변동비),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의 20%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정부지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자금제조달 규정)

자본구조 변경시 운영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제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감독명령권 등에 의한 조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포함)'상 자본금 잠식 및 자기자본 유지비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감독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음

사.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지원에 관한사항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년 부족분 '03년 지원	'03년 부족분 '04년 지원	'04년 부족분 '05년 지원	'05년 부족분 '06년 지원	'06년 부족분 '07년 지원
통행료수입계획		1,025	67	217	234	246	261
보 장 통행료 수 입	계	881	60	195	211	207	208
	90% ('02.9.1부터)	559	60	195	211	93	-
	79.8% ('05.6.1부터)	322	-	-	-	114	208
실제통행료수입		305	26	74	68	69	68
재정지원금액 () 내 : 지급 차감금액		520 (208억 포함)	34	121	143 (100억 포함)	138 (54억 포함)	84 (54억 포함)

※ 통행료 징수기간 : '02. 9. 1 ~ '26. 8. 31(24년간)

※ 재정지원기간 : '02. 9. 1 ~ '22. 8. 31(20년간)

□ 2007년 이후 연도별 지원계획

- '범안로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으로 장래 추정교통량을 분석 이 완료되어야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 할 수 있음

아. 투자비 및 재정지원금액, 통행료징수에 관한사항

□ 투자비 및 재정지원금액, 통행료 징수계획

※ 기준 2001. 1. 1. 불변가(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투자비	계	2,243	
	대구시	571	
	민자사업자	1,672	
재정지원금액	계	-	
	지원 실적	520	차감지원액 208억원포함
	지원 계획	아래참조	
통행료 징수계획		7,326	실시협약에 의한 24년간('02~'26년) 통행수입

※ 재정지원금 지원계획

‘범안로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으로 장래 추정교통량을 분석 이 완료되어야 재정지원 규모를 추정 할 수 있음

자. 감가상각비, 관리운영권 상각비에 관한사항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비 고
차량운반 구	취득원가	59	59	59	59		
	감가상각누계액	38	48	55	59	-	
	잔존가치	21	11	4	-	-	
비 품	취득원가	145	151	118	132	148	
	감가상각누계액	101	125	103	116	124	
	잔존가치	44	25	15	16	23	

※ 동부순환도로 회계감사 보고서에 의함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거 무형자산상각비의 과목으로 정액법으로 처리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
- 실시협약상의 무상사용기간('02. 9. 1 ~ '26. 8. 31, 24년)동안 균등상각

(단위 :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관 리 운영권	기초금액	-	51,624	157,074	150,437	143,801	137,163
	건설중인 자산 대체	52,148	109,057	-	-	-	-
	관리운영권 상각	524	3,607	6,637	6,637	6,637	6,637
	잔존가치	51,624	157,074	150,437	143,801	137,163	130,526

※ 동부순환도로 회계감사 보고서에 의함

Ⅲ.주요 활동성과

1. 사업분석 연구용역 시행

- 범안로 통행량이 계획의 30% 수준으로 시 재정지원 부담 과중
- 범물주민, 수성구의회, 시의회에서 범안로 통행 무료화 요구
-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

□ 용역개요

- 용역명 :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 용역금액 : 48백만원
- 용역기간 : 2007. 7. 11 ~ 2008. 1. 7
- 용역기관 : (재)대구경북연구원

□ 추진상황

- '07. 1. ~ 7 : 용역 입찰방법 검토, 시의회 협의 등 발주 추진
- '07. 7. 11 : 용역 착수
- '07. 7 ~ 8 : 관련 계획 및 자료 수집·분석
 - ※ '07. 8. 23 :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8. 28 : 교통량 현장조사
- '07. 9. 28 : 1차 자문회의
- '07. 11 : 교통수요 재추정 및 경제성 등 분석
- '07. 11 : 2차 자문회의
- '07. 12 : 중간성과 제출
- '08. 1. 7 : 용역 완료
- '08. 2 : 합리적 운영방안 결정

2.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여론 수렴

□ 공청회 개최

- 일시 : 2007. 8. 23(목)
- 장소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 참석 : 400명

시민1) 사회간접개발은 우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기본 원리는 맞다. 그런데 특히 우리 범안로에 삼덕요금소하고 범어요금소하고는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림.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존 속력으로 우리 규제속력대로 500원내고 바로 닥쳐서 600원을 낸다. 지금 우리가 범안로라고 이름 지은 것은 공사를 할때 범물동에서 안심까 도로의 개념으로서의 범안로지 요금 징수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범안로가 아님. 그리고 업자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경비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100을 잡았을때 처음 협약을 할때 90 플러스마이너스 10 해서 90까지는 자체 운영을 하고 90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도록 돼어 있음. 30%내려와도 관계없고 10% 내려와도 관계없음. 보전 다 해 준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준다. 또한 범안로 민자유치 된 것이 1,6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계산방법이 업자의 계산방법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따라오라고 할 때는 우리 정부기관이 무조건 팔려 간다. 우리 협약을 세 번 바꿨다. 처음에 한번하고 2차, 3차 바꿨다.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람.

시민2) 지정기부금 472억, 미지정 기부금 480억 합계 대구시에 952억을 대구시에다가 갖다 바쳤음. 지산·범물 주민이 사회간접자본 시민이 고루 이용하고 고루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범안로가 고루 이용하고 고루 부담하는 곳인지? 이걸 쉽게 생각해서 대구시하고 민간업자하고 고스톱 치는데 대구시는 고스톱 칠 줄 모르고 민간업자는 도사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범물에서 상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민자로 해가지고 유료도로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음. 특정지역에만 계속 유료도로를 만드는 것이 대구시의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서 제 주장은 대구시가 즉각 사들여서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대구시가 기체사업하고 나중에 통행료를 4차순환도로를 완성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고루 다 부담하도록 하면은 상환재원이 충분히 될 수 있음. 그런데 민간업자에 끌려가서 하는 민자유치사업은 이미 한번 실패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니까 안타깝다.

시민3) 계약기간 동안에 약 3,000억에 대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기체를 발행하든 어떻게 대구시에서 이 사업권을 회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합리적이라 하는 것이 투입 대비 산출임. 가장 적게 들이고 크게 소득을 가지면 가장 좋기 때문에 손실 볼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이 나와 있다고 본다. 우선에 이 범안로는 우리 지산·범물 주민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금의 일부로서 목적기부가 92년도에 234억 있었음. 그 돈 92년도부터 97년까지 약 4년, 5년간 누가 보관했는지? 고산국도 사업을 할 때에 한 1,000억 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실시협약이 두 번 변경되어서 총 계약이 세 번 이루어 졌는데 실시협약을 또 다시 변경할 수 있느냐? 마지막 실시협약서에 이 계약서는 또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초에 계약할 때 실시협약이 향후에 변경의 여지가 있었는지?

시민4) 타 지역의 주민들이 유료도로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우려해서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여지껏 시민의 혈세를 목적기부한 것을 전용한 전례는 남겨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 또는 대구시민 전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보고서에도 기록이 나와있음. 범안로 하나만 보고 했으면 이것 장사 안되니까 남을 게 없으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상인동에서 범물동까지 그 순환도로도 다 개통된다고 보고 했다. 그게 안되어서 교통량이 적었다 이런 이유임. 우리가 지산이나 범물동에 아파트 분양받아 올때 앞으로 기반여건이 도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분양받았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안 되어서 지금은 당시에 시지나 다른 지역의 45평 대비 2,000만원 비쌌던 아파트가 지금은 거꾸로 됐다. 결국은 대구시에 사기 당한 것임. 도로 내주께,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집 팔아먹고 지금 약속은 안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음. 이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의 재정이 적자나서 앞으로 이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매꿀 것이냐 이것을 가장 대구시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 세계육상경기가 있기 때문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그 예산의 일부라도 필요에 의해서 또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전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보전금을 일부 충당하면 될 것이고, 또 나머지는 기채를 방행해서라도 사업권을 회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을 함.

시민5) 범물동에서 35년 살면서 범안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범안로와 그 사이에 농로 길이있음. 고산을 갈 수도 있고 청도로 갈 수도 있는 농로를 막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함. 대한민국의 농로도 길이고 차로임. 차로를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범물동 뿐이다. 범안로 사이에 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그리로 못가도록 해서 500원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내가 농사지은 포도 한상자를 싣고 올때 왜 500원을 더 주고 싣고 와야 하는지? 이 농로길을 열어주기를 부탁함.

IV 조사결과 주요 문제점

1. 사업추진상 주요 문제점

㉠ 계획교통량 산정에 대하여

- 도로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의 경제성판단과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함.
- 범안로의 계획교통량은 1996년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자체 확정하여 제시한 통행량으로서, 최근 5년 동안 실제 교통량은 계획 대비 평균 34.3%이고[표3-1], 실제 통행료 수입은 평균 29.8%에 불과한 실정임.[표3-2]
또한, 매년 실제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2021년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기간 동안은 매년 4.3%~3.2%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함으로써 계획교통량이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지원규모도 매년 점증하게 되어 있음.
- 이렇게 산정된 결과 통행료 수입을 제외하고도 2022년까지 20년간 민자사업자의 투자금액(1,683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5,151억원)을 대구시가 예산 등으로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표3-2]~[표3-4],
각종 지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금액은 매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런 결과에 대해서 IMF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주변 개발계획의 지연 등을 들고 있으나, 사전에 이를 감안하여 교통량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했고, 또한, 2011년 상인~범물간 도로 개통, 2012년 동구 혁신도시 입주 완료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당초 계획교통량이 매우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시행됨으로써,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통수요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민자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3-1] 계획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 현황

(단위 : 대/일)

구 분	2002년 (9.1일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평균)
계획통행량 ¹⁾	53,733	56,036	58,443	60,953	63,571	292,736 (58,547)
실제 통행량	21,940	20,685	19,018	19,530	19,235	100,408 (20,082)
	40.8%	36.9%	32.5%	32.0%	30.3%	34.3%

[표3-2] 대구시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9.1일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평균)
통행료 수입계획		66.88	216.62	233.89	246.56	260.87	1,024.82 (204.964)
보 장 통행료	계	60.19	194.96	210.50	207.32	208.18	881.15
	90% ('97.4.21~ '05.5.31)	60.19	194.96	210.50	93.23	-	558.88
	79.8% ('05.6.1~ '22.8.31)	-	-	-	114.09	208.18	322.27
실제 통행료 수입 (계획대비, %)		26.59	73.96	67.56	69.57	67.82	305.50 (61.100)
		39.8	34.1	28.9	28.2	26.0	29.8
재정지원 현 황	계	33.60	121.00	142.94	137.75	140.36	575.65
	대체지원 ²⁾	-	-	100.00	53.95	53.95	207.9
	현금지원 ³⁾	33.60	121.00	42.94	83.80	86.41	367.75

1) 계획통행량(실시협약 상 통행량) = 대구시 제시 통행량 = 시행자의 사업계획서상 통행량

2) 대체지원 : 자금재조달에 따른 대구시 환수금액으로 지원한 금액(207.9억원)

3) 현금지원 :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금액

[표3-3] 민자사업자의 총 투자비 및 재정지원 예상액

구 분	금 액	비 고
■ 총 민간투자비	1,683억원	• 도로건설비용
■ 총 재정지원 예상액	5,151억원	• 20년간 재정지원(보장) • 지원사유 : 통행량부족
■ 총 통행료 수입	7,326억원	• 24년간 통행료 징수

② 최소운영 수입 보장금 지급 협약에 대하여

1) 최소운영수입 보장 수준에 따라 재정지원규모 결정

-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원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2006년도 부터는 고시사업에 대한 운영수입 보장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보장수준은 초기 5년은 75%, 다음 5년은 65%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 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민자사업의 경우 교통수요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예측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산정되면, 민간사업자로서는 장래 실제 교통수요가 적더라도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다소 유리하게 되고, 대구시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되는 것임.
- '97.4.21 범안로에 대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교통량 보장 비율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까지 보장하였으며, 2005.6.1부터는 79.8%를 보장하고 있음.
- 이와같은 보장 결과에 따라 2002~2006년까지 5년간 통행량 부족으로 575억원의 자금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 이후 총 지원금액은 4,576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각종 지표가 계획대로 추진 되지 못할 경우 2008년 이후는 매년 15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표3-4]
- 범안로는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수요의 과다 예측과 다소높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열악한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표3-4] 향후 재정지원 예상액

(단위 : 억원)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2022
4,576	158	155	153	152	153	180	209	238	269	2,909

<자료 : 대경연 연구용역 보고서>

2)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지연지급 이자발생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지침)에 의하면 재정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보장금의 지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2.3.13의 1차 변경협약서(제45조 ⑦, 제50조 ③)에 따르면 청구일이 속한 당해 연도분 수입보장금 지급시기를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 2005.6.7 2차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의 확보여부가 유동적인데도 수입보장금액 지급 시기를 청구일이 속한 당해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제4조 (6), (7)]함으로써, 실제로 2006년도에 지연이자 32백만원을 함께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 사유는 통행료 수입보장금액 지급시기에 대한 협약 미숙과 당초예산에 지원금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행 협약서는 매년 6월말까지 지원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지급분에대한 높은 연체이자(2007.11말 현재 6.58%)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협약내용의 변경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3] 자본재조달을 통한 자본구조 변경에 대하여

- 2005.6.7 2차 변경협약을 통하여 출자자 변경과 자본구조 변경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3-5]와 같음.
- ※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 ※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란 기업이 조달한 자본 중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이 어떠한 비율로 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조

[표3-5] 범안로 자금재조달 전후 비교

구 분	기 준	변 경
출 자 자 (주주)	코오롱건설 (29.28%) 영남건설 (16.44%) 지에스건설 (14.58%) 금호산업 (10.28%) 화성산업 (10.28%) 삼성물산 (10.00%) 동아건설 (8.30%) 태 왕 (0.84%)	맥커리대구동부순환도로 투자(100%)
운영수입 보 장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추정통행료 수입의 79.8%
자본구조	관리운영권 : 1,660억원	관리운영권 : 1,740억원
	자기자본금 594억원(35.8%) 선순위차입금1,066억원(64.2%)	자기자본금 297억원(17.1%) 선순위차입금1,066억원(61.2%) 후순위차입금 377억원(21.7%)

1) 자금제조달에 따른 민자사업자의 이익 발생

- 민자사업자가 자기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이 부담해야할 우발채무(해지시 지급금)는 증가하고, 차입금이자 증가로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투자자금 조기회수에 의한 이익의 실현, 후순위 차입금 이자를 통한 특수관계자의 투자수익 발생 등을 통하여 민자사업자는 노력과 상관없이 이익이 얻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자금제조달에 따르는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으로 공유하도록 지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예산처)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안로 민자도로에서도 자본제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로 대구시의 환수대상 금액은 207.9억원이 발생하였음.
- ※ 위의 [표3-5]에서 선순위 차입금 1,066억원은 1차 변경협약 제2조 제1항 58호 및 제58조, 2차 변경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총선순위채무”로서,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채무원리금을 의미하며, 이는 마찬가지로 계약의 중도 해지시 대구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임.

2) 환수대상 공유이익금의 재정지원 현황관리

- 2005.6.7 “범안로 유료도로 자금 제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한 자금을 재 조달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정부지침)의 이익 공유비율에 따라 대구시가 환수해야 할 공유이익금 207.9억원을 사업자의 요청(2005.2.14)에 따라 2005년부터 3년간 분할환수(2005년 100억, 2006년 54억, 2007년 54억원)하되, 대구시가 지원해야 하는 수입보장금(대구시 보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정부지침에 따르면 자금 제조달에 따르는 공유이익은 사용료 인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는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편익이 이용 시민들에게는 직접 돌아가지 는 못하게 집행되었음.
- 이와같이 현금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재정지원금에서 공제토록 한 것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대구시의 연간 재정지원 규모를 외견상 축소시켜 시민 여론의 부담을 덜고, 민자사업자의 유동성 문제 발생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침서에서 밝히고 있음.
- 또한, 민자사업자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관리함에 있어, 207.9억원을 대구시의 재정지원 현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재정지원 규모를 외견상 축소시키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실대로 재정지원 금액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것임.

3) 자금제조달 이후 이자비용의 급격한 증가

- 자금제조달시 이루어진 가장 큰 특징은 사업시행자가 상법상 납입자본금의 50%를 한도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이자율 15%)를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임.
- 재무구조 변경전 회사의 장기차입금은 1,066억원이었으며, 이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평균 5.96%로써 연간 이자는 64억원정도였으나, 2005. 6월 자본제조달 이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 1,066억원과 후순위 차입금 377억원 등 1,443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무구조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후순위 차입금만큼 차입금이 증가하였고, 후순위 차입금 377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15%로 13-4년에 걸쳐(13년, 14년 각 시점에서 원금 50%씩 상환) 매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평균이자율은 9.02%로서 연간 발생이자 130억원이 발생하여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2006년도 통행료 수입 67억원)으로 이자비용의 지불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표3-6]

- 이와 같이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을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주주의 관계회사가 대출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되고 있고, 주주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2006.12. 국회예산정책처의 「민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재조달 사후평가」 25쪽, 삼일회계법인 용역보고서 22쪽)
- ※ 후순위차입금이란 일반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차입금을 빌려준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되는 차입금을 말함. 따라서 변제청구권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율이 선순위 차입금보다 다소 높음.

[표3-6] 재무구조 변경전후 금리비교

(금액단위 : 백만원)

재무구조 변경전					재무구조 변경후					
구 분	차입원금	이자율	연간이자	평 균 이자율	구 분	차입원금	이자율	연간이자	평 균 이자율	
국민은행 외	6,500	6.91%	449	5.96%	선순위	국민은행	20,000	6.50%	1,300	6.91%
	33,900	6.58%	2,231			교보생명등	86,600	7.00%	6,062	
	3,800	5.67%	215			소계	106,600		7,362	
	35,600	5.67%	2,019		후순위	백퀴리등	37,700	15.00%	5,655	15.00%
	26,800	5.37%	1,439			소계	37,700		5,655	
합 계	106,600		6,353		합 계	144,300		13,017	9.02%	

<자료 : 2004/2006 외부감사보고서, 평균이자율=이자/차입금×100>

4) 자본재조달 이후 납입자본금의 급격한 감소

- 2005.6.7 2차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납입자본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변경협약서 제7조), 사업자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규모를 줄이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투자비(자본금, 594억원)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음.
- [표3-7]의 연도별 자본금 변동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제로 1997.4.21 당초 협약체결 시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은 594억원이었으나, 2005.6.7 2차 변경협약에 따라 297억원으로 1/2 줄어들었고, 2006년 말 현재는 납입자본금 전액이 잠식됨으로써 자기자본은 부의 상태(△245백만원)가 되었음.
-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 전액 잠식됨에 따라 각종지침을 위반(대구시 기본계획은 20%이상,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건설기간 중 25%이상, 운영기간 중에는 최저 10%이상 자기자본 비율 유지, 납입자본금 기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3-7] 연도별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산총계		1,622	1,562	1,614	1,546	1,454
부채총계		1,074	1,075	1,074	1,458	1,457
자본	납입자본금	594	594	594	297	297
	결손금 등	△47	△107	△54	△209	△299
	자본총계	547	487	540	88	△2

5) 자금제조달시 금융부대비용 과다발생

- 자금제조달 부대비용은 공유할 자금제조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필요비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적정수준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
- 2005. 6월 변경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사업자는 자금제조달과 관련한 금융부대비용을 52억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대구시에 제시하여 협의하였으나[표3-8], 2005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실제로는 73억원 정도의 금융부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표3-8] 자금제조달 비용 부담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자금제조달시	선순위차입금 주선수수료	1,590
	후순위차입금 주선수수료	565
	신용공여 대출금 주선수수료	300
	조기상환수수료	1,173
	소 계	3,628
자금제조달 이후	대리은행 수수료	750
	신용공여 은행 약정수수료	900
	소 계	1,650
합 계		5,278

<자료 : 자금제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계획 방침서, 삼일회계법인 용역보고서>

2.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

□ 도시개발공사 부담 사업비를 협약내용과 다르게 집행

- 범물, 시지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범물지구~고산국도(B=35~50m, L=7.7km)간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42,780백만원)는 공사(공사)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 지역 택지개발 사업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1995.11.29 협약을 체결하였음.
- 공사(공사)가 부담한 사업비 42,780백만원 중에서 23,380백만원은 범물지구, 19,400백만원은 시지지구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범물·시지지구 주민들이 사실상 이지역 도로건설 사업비를 일부 부담한 결과를 가져왔음.
- 공사가 1차로 부담한 23,380백만원(보상비 5,459, 공사비 17,380, 기타 541)은 범물지구 229천평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89.11.17승인)을 조건으로, 범물동~삼덕동간 도로건설공사(B=35m, L=2.8km, 대로 1류 21호선 1단계 공사)를 목적으로 부담하였으나,
- 1995.11.29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체결 6개월 후인 1996.5.30 협약내용과 다르게 동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한 사업비를 일부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고,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유료화함으로써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중부담을 지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3.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

□ 과다한 차입경영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거당 설정

- 범안로에 대한 민자사업자의 총 투자비용은 1,683억원으로 이중에서 1,443억원을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2005년말 현재 부채비율 1,658%, 차입금 의존도가 93%이고, 2006년말 현재는 자기자본이 부(부)의 상태로서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게 된 상태임.[표3-9]
- 회사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보다 많은 2,339억원을 대출약정 하였으며, 범안로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에 대하여는 2007.3.13 3,040억원(채권최고액)의 근거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동 금융기관으로부터 1,443억원을 차입한 상태로서, 투자비용 대부분을 차입하고, 도로의 관리운영권에 대하여는 막대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과다한 부채로 2006년도에 영업수익(통행료 수입) 67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130억원을 차입금 이자로 지불함으로써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표3-9] 연도별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및 이자비용

(단위 :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채비율(%)	196.3	221.0	199.2	1,658.2	산출불가
차입금의존도(%)	65.8	68.2	66.0	93.3	99.19
이자비용(억원)	42	79	72	102	130

※ 산식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② 사업자의 납입자본금 전액 잠식

- 2006년말 현재 민자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는 매년 지속적인 결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 297억원 전액이 잠식된 상태로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 상태임.[표3-10]
-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전액 잠식은 상장폐지조건에 해당되어 시장에서 퇴출사유임.
- 따라서 운영기간 중에는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도록 한 정부(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정부지침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은 감독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정부지침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3-10] 연도별 손익발생 현황

(단위 : 억원)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16.1	△34.4	△58.1	21.5 (이익발생)	△154.7	△90.4

※ 2004년도 이익발생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29.7%→27.5%)의 결과임

4. 실시협약상의 주요 문제점

① 1997.4.21 당초협약서의 문제점(현재 효력상실)

해당조문	주요 내용	문 제 점
제1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미실시설계구간(2구간)의 공사비는 기실시설계구간의 산정비율을 기초로 산정하되, 대구광역시와 협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구벌대로~안심국도구간(L=3.2km)은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체결 이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 산정을 위한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은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연도별 추정통행량 및 추정 통행료 수입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추정교통량 및 추정통행료 수입을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한다고 협약한 것은 일방적인 사업자측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임.
제46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구 삼덕동 ~ 시지택지간 도로(유니버시아드도로) 건설공사를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가 미약한데도 95%의 낙찰률로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 규 모 : B=35~50m, L=3,650m - 사업기간 : 1997.12.29~2001.5.31 - 계약금액 : 62,143백만원 ※ 2002년 협약서 제52조 제4항
46조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산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시점~봉덕동) 및 안심~서변동까지의 도로 건설공사를 2004년까지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한다는 규정이 아닌 명시규정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불가능한 내용을 협약 ▪ 사업자에게 협약위반 빌미제공

2 2002.3.13 1차 변경협약서의 문제점(현재 유효)

해 당 조 문	주 요 내 용	문 제 점
제2조 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협약에는 추정통행료 수입의 80%로 되어 있었으나(제44조 제2항), 협약을 변경하면서 10%를 상향조정하여 대구시 재정부담 증가
제1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기간은 58개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도 당초협약에는 공사기간이 42개월이었음.(제16조) 협약을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이 16개월 증가하여 공사비 증가
제3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는 200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130억원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 당초협약에서 운영비는 1,522억원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금액만큼 산정되었음.(37조 제1항) 2002년 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비를 1,130억원으로 변경하여 392억원이 줄어들었지만, 2026까지 법인세 1,359억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자의 입장반영
제3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사업연도 운영비용은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사업연도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운영비용을 상호전용하거나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었음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익률은 세후실질수익률을 의미하며, 9.44%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익률은 97년 7.88%(제40조)에서, 2002년 9.44%로 1.56%증가, 2005년은 9.28%(제6조)로 0.16% 감소함으로써 2002년도에 급격하게 사업수익률을 증가시켜 주었음.
제4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 완공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개시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본래의 공사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동안만큼 무상사용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에 의하여 통행료 징수기간은 2002.9.1~2026.8.31까지 24년간이나, 삼덕요금소가 2001.10.5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약 11개월 동안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해 당 조 문	주 요 내 용	문 제 점
제42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행료는 징수가 용이한 100원단위로 절상(삭)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료는 소형은 500원이나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800cc미만의 경차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00원을 받고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차 활성화에 반하고 있음.
제4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실재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90%)에 미달하는 경우는 보장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1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 당초협약서의 80%미만을 2002년 1차 변경협약을 하면서 90%미만으로 10%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2002년 협약서 제44조 제2항)
제50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금 지연지급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가산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11월 말 현재 한국증권업협회 고시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6.58%로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연체이자율로는 다소 높은 이자율임
제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인근의 도로노선 신설 시에는 보상하고, 기존도로 확장 시에는 사업자와 협의하기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이 곤란하게 됨(24년간) 도로교통량의 현저한 감소와 보상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함 기존도로 확장시에도 협의하기로한 것은 이를 계기로 사업자의 재정지원 요구 등 우려
제52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호강변도시고속도로 등 향후 건설되는 다른 연계도로망 및 도로 시설물의 설치 시 우선적으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안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로건설 시에도 민자사업자와 협�토록 함으로써, 개설시 재정 지원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음 (24년간)
제52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물동(시점)~앞산순환도로 연결도로와 안심~서변동 연결도로를 2008년 개통하는 것으로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협약서에서는 2004년까지, 2002협약서에서는 2008년까지 개통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협약 개통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지에 대해서는 예측되지 않고, 불가능한 내용을 협약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재정지원 요구 등 우려

3 2005.6.7 2차 변경협약서의 문제점(현재 유효)

해 당 조 문	주 요 내 용	문 제 점
제4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시 환수금액 207.9억원의 환수방법을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하도록 협약체결 (2005년 100억, 2006·2007년도 각 53.9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료 조정(인하)에 우선 미사용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하는 재정지원금으로 사용) 차감 지원액 207.9억원을 민자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현황에 미포함
제4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금 지급시기를 6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협약서에 의하면 재정지원금의 청구일이 속한 연도의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하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45제 제7항, 제50조 제3항) 2005년 협약을 변경하면서 예산의 확보여부가 불투명 한데도 청구일이 속한 연도의 6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지급시 지연이자 지급 (2007. 11말 현재 연체이자율 연 6.58%) ※ 2006년도 지연이자 32백만원 지급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자본금의 50%를 후순위 차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의 자본금 축소·회수 결과초래 (594억→297억→자본 전액잠식) ※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상태

V 조사의견 및 시정촉구사항

1. 특별위원회 조사의견

□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 2007.12.27. 제165회 임시회 범안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음의 의견을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
- 채택의견

범안로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

□ 범안로 민자도로 매입방안

- 민자사업자의 은행 차입금 1,443억원을 대구시가 채무 인수할 경우 57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인수가 가능함
- 2007~2022년까지 1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4,576억원(불변가격 기준)이므로 이들 예산의 확보시기를 조정(16년→10년)하여 매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 용역에서 운영권 회수시 지급금 2,008억원(2008년1월기준 현재가치)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나, 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 상환할 경우 5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재정지원금 4,576억원의 예산확보 일정 조정, 사업자의 채무 인수를 통한 운영권 회수방안 이외에도 매년 1,10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2. 시정촉구사항

가. 교통량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및 수익사업 적극검토

- 조사결과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30%대에 불과하고, 매년 실제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어 통행량 부족에 따른 대구시의 연간 재정지원 규모가 150억원이상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대구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구시와 민자사업자는 대구시의 재정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범안로의 교통량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광판 이용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자의 자기자본 유지비율 준수방안 강구

- 대구시의 범안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납입자본금 기준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지침(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07년 말 현재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은 전액이 잠식된 상태로 정부지침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 민자도로 건설시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확보방안 강구

-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의 경제성 판단과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범안로의 실제 교통량이 계획대비 30%대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대구시의 연간 재정지원 규모가 15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민자도로 건설시 계획교통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

라. 민자도로 건설시 교통수요를 과다하여 예측하여 대구시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한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범안로 민자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된 “국우터널” 민자도로 운영실태(2006년 통행량 94.3%)와 비교할 때, 교통량 추정이 현실과 다르게 과다 예측(2006년 통행량 30.3%)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시의 막대한 재정 손실(연간 150억원이상)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도, 러한 용역업체가 대구시의 각종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용역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재정 손실을 끼친 용역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대구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함.

마. 운영권 회수를 위한 조속한 협상 착수

- 범안로 건설에 대한 민자사업자의 총 투자금액은 1,683억원이고, 교통량 과다 산정으로 대구시가 20년간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금액이 5,151억원으로 예상(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 95쪽) 되었으며, 24년간 민자사업자의 통행료 징수 금액은 7,326억원으로 분석되고 있어, 행량 부족에 따라 5,151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수반하고 있어 열악한 대구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및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스포츠·레저 콤플렉스 조성, 시립미술관 및 돛 야구장 건립, 도시철도 3호선의 월드컵경기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이용자의 증대가 필요한 대단위 사업과 행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수익의 창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범안로의 운영권회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함.

바. SOC민자사업 추진 시 사업자와 관련사업 수의계약 발주 지양

- 범안로 민자도로를 건설하면서 2002년도 변경협약서 제52조 제4항(당초 협약서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니버시아드 도로(수성구 삼덕동~시지택지간 도로)를 건설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당시 평균 낙찰률을 상회하는 95%의 낙찰률로 민자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음.
- 시의회에서도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민자사업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특혜성의 시비를 불러 이러키는 사례가 없도록 민자사업자와 현장 주변의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사. 부체도로 이용에 따른 민원예방

- 범안로 양측의 부체도로는 범안로 건설로 인한 기존 부락의 통행과 영농활동을 위한 도로로서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되어야 함.
-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시 지역주민(기존부락 주민 및 영농활동 통행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호소한 바와 같이 영농활동 등에 불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부체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